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3. 14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던 것을

⇒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
(제7조)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중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제12조의2)

-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중 기존 시장에 입점한 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5년전부터 입점해야 면제가 되던 것을

⇒ 시장 재개발후의 분양을 촉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시기를 3년전으로 완화함 (제16조제2호)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1호)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에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간을 입점시기 3년 전으로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나, 동조

제1호에는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으로만 명시되어 수산가공품

생산업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동법 제2조(정의) 제4호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가공업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 (제7조)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중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 ⇒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 (제12조의2)

-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중 기존 시장에 입점한 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 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5년전부터 입점해야 면제가 되던 것을
 - ⇒ 시장 재개발후의 분양을 촉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시기를 3년전으로 완화함 (제16조제2호)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1호)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 의안전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2조의2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본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건설업(5업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건설업(29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등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電氣設備

나.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信號標識

3. “공사업자”라 함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소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52조(소방시설공사사업의 등록 등)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이하 “소방시설공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 '02. 1. 26, 법률 제6639호)

(중전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 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시장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위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선정 및 지원) ①중소기업
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市場)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시장(市場)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 2001. 1. 29, 법률 6399호)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등) ①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2001. 1. 29, 법률 제6399호)

제16조(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장의
설치·운영